

규정/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ACA, ACA-RA, ACG, ACG-RB, BLB
 책임 사무실: Chief Operating Office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고용,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 관련 장애인 대상 합리적인 편의 제공 및 수정 Reasonable Accommodations and Modification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ith Regard to Employment, Services, Programs, and Activities

I. 목적

2008 년의 미국 장애인법 개정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mendments Act of 2008*)에 따라 일반 대중,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직원, 장애가 있는 취업 지원자의 편의 요청을 처리하는 절차를 수립합니다.

II. 이슈

A. 이 규정은 자격을 갖춘 장애인의 MCPS 서비스 참여; MCPS 입사 지원 절차, 직원 채용, 승진, 해고, 직원 보상, 직업 훈련과 기타 고용 조건 및 특권에 적용됩니다. 자격이 되는 장애 학생에 대한 절차는 규정 ACG-RB, 1973 년 재활법 504 조에 따른 적격 학생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 및 수정(*Reasonable Accommodations and Modifications for Students Eligible Under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B. 2008 년 미국 장애인법 개정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mendments Act of 2008 (ADAAA)*)은 고용, 주 및 지방 정부 서비스, 통신 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보호하는 포괄적인 민권 법안입니다. 이 규정은 ADAAA 및 ADAAA 의 시행 규정에 부합하도록 해석되어야 합니다.

C. 장애가 있는 개인(*individual with a disability*)이란 -

1. 개인의 주요 생활 활동 중 하나 이상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2. 그러한 장애 기록이 있는 사람, 또는
 3. 그러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 a) 개인이 실제로, 또는 그렇다고 보여지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해당인은 그러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일시적이고 경미한 장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장애란 실제 또는 예상 기간이 6 개월 이하인 장애를 말합니다.
 - b)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의 정의를 충족하는 개인은 정책, 관행 또는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편이나 수정을 제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D. 관리 및 감독 직원은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고용 정책, 규정 및 관행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III. 정의

- A. *보조 지원 및 서비스(Auxiliary aids and services)* 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자격을 갖춘 통역사, 또는 청각 장애가 있는 개인이 청각적으로 전달되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타 효과적인 방법.
 2. 자격을 갖춘 낭독자, 녹음된 텍스트 또는 시각 장애가 있는 개인이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타 효과적인 방법.
 3. 장비 또는 장치의 취득 또는 개조.
 4. 기타 유사한 서비스 및 조치.
- B. *직접적인 위협(Direct threat)*이란 합리적인 편의를 통해 제거하거나 경감할 수 없는,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상당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의미합니다.

- C. *장애(disability) 및 자격을 갖춘 장애인(qualified individual with a disability)*이라는 용어에는 MCPS 가 약물 사용을 근거로 행동하는 경우, 현재 불법 약물 사용에 관여하고 있는 개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D. *필수 기능은 MCPS 가 결정한 고용 직책의 기본 직무로서 장애인이 보유하거나 희망하는 직무입니다.* 이 용어에는 해당 포지션의 한계 기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E. *대화형 절차(Interactive process)*는 합리적인 편의 또는 조정을 요청하는 고용주와 자격을 갖춘 장애인 개인 간의 정보 수집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며, 직원 직무의 필수 기능을 분석하고, 개인의 장애로 인한 직무 관련 제한을 결정하고, 직원이 필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편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직원의 상사 및 직원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F. *저시력 장치(Low vision devices)*는 시각적 이미지를 확대, 향상 또는 보강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 G. *주요 생활 활동(Major life activities)*에는 자기 돌보기, 수작업 수행, 보고, 듣고, 먹고, 자고, 걷고, 서고, 들어 올리고, 구부리고, 말하고, 숨 쉬고, 배우고, 읽고, 집중하고, 생각하고, 의사 소통하고, 일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요 생명 활동에는 면역계 기능, 정상적인 세포 성장, 소화기, 장, 방광, 신경계, 뇌, 호흡기, 순환기, 내분비 및 생식 기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요 신체 기능의 작동 또한 포함됩니다. 한 가지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장애는 장애로 간주되기 위해 다른 주요 생활 활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 H. *완화 조치(Mitigating measures)*에는 약물, 의료 용품, 장비 또는 기기, 저시력 장치(일반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제외), 의수 및 장치, 보청기 및 인공와우 또는 기타 이식형 청각 장치, 이동 장치 또는 산소 치료 장비 및 용품을 포함한 보철, 보조 기술 사용, 합리적인 편의 또는 보조 보조 도구 또는 서비스, 학습된 행동적 또는 적응 신경학적 수정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I.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Physical or mental impairment)*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신경계, 근골격계, 특수 감각 기관, 호흡기(언어 기관 포함), 심혈관계, 생식계, 소화기, 비뇨생식기, 혈액 및 림프계 중 하나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생리적 장애 또는 상태, 미용적 손상 또는 해부학적 손실, 피부 및 내분비; 또는

2. 지적 장애, 기질성 뇌 증후군, 정서적 또는 정신적 질환, 특정 학습 장애와 같은 모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

J. *교장/관리자(principal/administrator)*라는 용어는 MCPS 학교의 교장 또는 학교가 아닌 MCPS 단체의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K. *프로그램 접근성(Program accessibility)*은 MCPS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볼 때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L. *자격을 갖춘 장애인(qualified individual with a disability)*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은 해당 장애인이 보유하거나 희망하는 고용 직책의 필수 기술, 경험, 교육 및 기타 직무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합리적인 편의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직책의 필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2. 서비스, 프로그램, 활동과 관련하여, 규칙, 정책, 관행의 합리적인 수정, 건축, 통신, 교통 장벽의 제거, 보조 보조기구와 서비스 제공의 유무에 관계없이, 장애인은 서비스를 받거나 MCPS 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M.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편의*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유자격 장애인 지원자가 원하는 직책에 고려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수정하거나 조정합니다.
2.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해당 직책의 필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 또는 해당 직책이 관례적으로 수행되는 방식이나 상황에 대한 수정 또는 조정.
3. 장애가 있는 MCPS 직원이 장애가 없는 비슷한 위치의 다른 MCPS 직원이 누리는 것과 동등한 고용 혜택 및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수정 또는 조정.

4. 합리적인 편의 제공에는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직책의 필수 기능을 제거하거나 재배치해야 하거나, 개인 또는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편의 제공, 변경 또는 조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N.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수정*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해당 수정이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서비스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질시키거나 개인 또는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피하기 위한 정책, 관행 또는 절차의 합리적인 수정
2. 해당 방법이 과도한 어려움이나 서비스의 근본적으로 변질시키거나 개인 또는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 한,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3. 해당 보조 장치가 서비스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질시키거나, 혹은 해당되는 경우 과도한 재정적 및 관리적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한,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위한 보조 장치 제공.

O. *서비스(services)*라는 용어는 MCPS 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프로그램, 활동을 포함합니다.

P. *실질적으로 제한(Substantially limits)*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주요 생활 활동 수행 능력이 현저히 제한됨.
2. 장애가 일시적이거나 차도가 있을 경우에도 만약 활동 시 주요 생활 활동을 현저하게 제한한다면 이는 장애입니다.
3. 장애의 주요 일상 활동에 대한 실질적 제한 여부는 완화 조치의 개선 효과와 관계없이 결정해야 합니다.

4. 개인이 주요 생활 활동에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는지 판단할 때는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a) 장애의 본질 및 정도;
 - b) 장애의 기간 또는 예상 기간; 그리고
 - c) 영구적 또는 장기적 영향 또는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영구적 또는 장기적 영향.

Q. *편의 제공 또는 수정과 관련하여 과도한 어려움 (Undue hardship)*이란 다음 사항에 비추어 고려할 때 상당한 어려움 또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1. 편의 제공 또는 수정의 성격과 순 비용;
2. MCPS의 전반적인 재정 자원;
3. 직원 수를 고려한 MCPS의 전반적인 규모;
4. MCPS 시설의 개수, 유형, 위치;
5. 지리적 독립성과 해당 학교 또는 단체와 MCPS 전체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관계를 포함하여 MCPS가 운영하는 업무의 유형; 그리고
6. 다른 직원 및 개인의 업무 수행 또는 서비스 참여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학교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 학교 또는 단체의 운영에 대한 편의 제공 또는 수정이 미치는 영향.

III. 행정절차

A.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OHRD)은 ADA에 따른 책임을 준수하고 이행하기 위한 MCPS의 노력을 조율할 책임이 있습니다. ADA 규정 준수 코디네이터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ADA 규정 준수 코디네이터는 아래 섹션 III.B에 명시된 대로 편의 제공 요청을 접수합니다.

B. ADA에 따른 편의 제공 또는 수정 요청

1. 누가 편의 제공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 a) 자격을 갖춘 장애인인 MCPS 직원은 필수적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기타 동등한 고용 혜택을 누리기 위해 MCPS 양식 270-6, *직원 ADA/AADAA 편의/수정 요청 (Employee Request for ADA/AADAA Accommodation/Modification)*의 해당하는 섹션을 작성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b) 자격을 갖춘 장애인인 입사 지원자는 지원 절차에서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에서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요청하려면 Department of Human Capital Management 에 staffing@mcpsmd.org 로 연락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 c) 자격을 갖춘 장애인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MCPS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은 MCPS 서비스/행사 스폰서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편의 제공/수정과 요청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 (2) 요청을 받은 교장 또는 감독자는 ADA 규정 준수 코디네이터에게 ADArequests@mcpsmd.org 로 연락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C. 대화형 절차

1. 편의 제공 또는 수정 요청은 주 및 연방법의 요건에 따라 대화형 절차를 통해 ADA 규정 준수 코디네이터가 결정하게 됩니다.
 - a) 요청 당사자가 양식 270-6 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ADA 규정 준수 코디네이터는 대화형 절차를 시작할 때 요청자와 협의하여 양식을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 b) 대화형 절차에서는 전체 상황을 고려할 것입니다.
2. 장애인이 ADA/AADAA 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 ADA 규정 준수 코디네이터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a) 개인이 합리적인 편의 제공 또는 수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직책의 필수 기능을 수행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합니다.
- b) 해당 개인이 개인 또는 직장 내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c) 개인이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 합리적인 편의 제공 또는 수정을 통해 위험을 제거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합리적인 편의 제공 또는 수정으로 위험을 제거하거나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할 수 없는,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개인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d) 직원, 입사 지원자 또는 개인과 협의하여 필수 직무를 수행하거나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편의 제공 또는 수정을 확인하거나 지정합니다.
- e) 요청된 편의 제공 또는 수정이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학교 또는 단체의 성격 또는 운영을 근본적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f) 보조금과 같은 MCPS 외부의 알려진 자금과 다른 학교나 시설의 유사한 편의나 수정 요청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면 고려합니다.
- g)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결정 사항과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통지합니다.

3.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D. 이의 제기

- 1. ADA 규정 준수 코디네이터의 결정에 대해 최고 운영 책임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이의 제기는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요청 당사자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요청 당사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조사 문서와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숙련된 청문관이 배정될 것입니다.
 4. OCOO 청문관은 이의신청 결과와 그 근거를 설명하는 서면 결정문을 발행합니다.
 5. OCOO 청문관은 요청 당사자에게 위원회 정책 BLB, *항소 및 청문회 절차 규칙* 및 주법에 따라 30 일 이내에 위원회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통지합니다.
- E. OHRD 를 통해 편의 제공을 요청한다고 해서 요청 당사자가 Maryland Commission for Civil Rights (MCCR)로 mccr.maryland.gov 에 직접 불만을 제기하거나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로 Baltimore District Office 에 직접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 G. 법률고문실(Office of the General Counsel)은 OHRD, 교육구 운영실(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학교 지원 및 복지 책임자실(Office of the Chief of School Support and Well-being)과 협의하여 이 규정에 명시된 책임을 가진 개인을 위한 정기적인 전문 학습을 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출처:

Annotated Code of Maryland, State Government Article §20-601; Ann. Code, Education Article § 4-205; U.S. Constitution U.S.C., Amendment 14; 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42 U.S.C. § 2000d et seq;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as amended, 42 U.S.C. § 2000e et seq;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20 U.S.C. § 1400-1487;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as amended, 29 U.S.C. § 794;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42 U.S.C. § 12131 et seq; Section 1981 of the Civil Rights Act of 1866, 42 U.S.C. § 1981

규정 변경사: 신규 규정 1994년 7월 20일, 2011년 12월 22일 개정, 2023년 2월 1일 개정.

MCPS 차별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조상, 출신국, 국적, 종교, 이민상태, 성, 성별, 성 역할, 성 표현, 성 취향, 가족 형태/부모 상태, 결혼 상태, 나이, 능력 상태(인지, 사회/정서, 신체), 빈곤,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또는 소속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우리 모두를 위한 형평성, 포용성, 수용을 창출, 육성 및 촉진하려는 우리 커뮤니티의 오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교육위원회는 증오를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상당한 방해로 일으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언어의 사용과/또한 이미지와 표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봅시다.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공평성이 내재적 편견, 정당화되지 않은 다른 관행,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MCPS 학생*에 대한 질문 또는 불평사항*	MCPS 교직원*에 대한 질문 또는 불평사항*
Director of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850 Hungerford Drive, Room 55,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SWC@mcpsmd.org	Human Resource Compliance Office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1973년 504 장애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학생용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교직원용
Section 504 Coordinator Office of Academic Officer Resolution and Compliance Unit 850 Hungerford Drive, Room 208, Rockville, MD 20850 240-740-3230 RACU@mcpsmd.org	ADA Compliance Coordinato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학생 또는 교직원*에의 성희롱 등, Title IX에 해당하는 성차별에 관한 조사나 불평사항	
Title IX Coordinator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850 Hungerford Drive, Room 55,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TitleIX@mcpsmd.org	

*차별에 관련된 민원은 다음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 (MCCR), William Donald Schaefer Tower, 6 Saint Paul Street, Suite 900, Baltimore, MD 21202, 410-767-8600, 1-800-637-6247, mccr@maryland.gov; 또는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OCR), The Wanamaker Building, 100 Penn Square East, Suite 515, Philadelphia, PA 19107, 1-800-421-3481, 1-800-877-8339 (TDD), OCR@ed.gov, 또는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본 통지는 개정된 연방 초등 및 중고등 교육법을 준수합니다.

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 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Office of Communication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 (Maryland Relay) 또는 PIO@mcpsmd.org로 연락하여 요청합니다. 수화 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 240-740-1800, 301-637-2958 (VP)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로 연락합니다.